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가합1134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이해진

변론 종결2023. 4. 11.

판결 선고2023. 5. 31.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21. 3. 1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게 특허청 2021. 3. 19. 접수 D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9 내지 19항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21. 5. 21.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C 주식회사에게 특허청 2021. 5. 21. 접수 E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C 주식회사의 대출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14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위 신용보증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C은 아래 표 '주채무'란 기재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14 대출'이라 한다).

1	2021. 1. 12.	F	370,600,000	2021. 1. 14. G은행 일반자금대출 436,000,000원 변제기 2021. 5. 27.	2021. 5. 27. 변경 2022. 5. 27.
2	2021. 1. 12.	H	170,000,000	I 은행 기업일반 운전자금대출 200,000,000원 변제기 2021. 5. 27.	2021. 5. 27. 변경 2022. 5. 27.
3	2021. 1. 12.	J	342,000,000	2021. 1. 15. K은행 일반자금대출 427,500,000원 변제기 2021. 3. 3.	2021. 3. 3. 변경 2022. 3. 3.
4	2021. 1. 12.	L	173,280,000	2021. 2. 17.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216,600,000원 변제기 2021. 11. 12.	2021. 11. 12.
5	2021. 1. 12.	M	259,200,000	2021. 2. 4. N은행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324,000,000원 변제기 2021. 5. 14.	2021. 5. 14. 변경 2022. 5. 13.
6	2021. 1. 12.	O	255,000,000	2021. 1. 19. P은행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300,000,000원 변제기 2021. 5. 21.	2021. 5. 21. 변경 2022. 5. 20.
7	2021. 1. 12.	Q	2,000,000,000	2021. 1. 12.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0원 변제기 2022. 1. 12.	2022. 1. 12.
8	2021. 1. 14.	R	1,000,000,000	2021. 1. 15. K은행 일반자금대출 1,000,000,000원 변제기 2022. 1. 14.	2022. 1. 14.
9	2021. 1. 15.	S	1,000,000,000	2021. 1. 15. I은행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1,000,000,000원 변제기 2022. 1. 14.	2022. 1. 14.
10	2021. 1. 20.	T	1,000,000,000	2021. 1. 21. P은행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1,000,000,000원 변제기 2022. 1. 20.	2022. 1. 20.
11	2021.	U	1,000,000,000	2021. 1. 22. G은행 일반자금대출 1,000,000,000원	2022. 1. 21.

1	2021. 1. 12.	F	370,600,000	2021. 1. 14. G은행 일반자금대출 436,000,000원 변제기 2021. 5. 27.	2021. 5. 27. 변경 2022. 5. 27.
	1. 21.			변제기 2022. 1. 21.	
12	2021. 1. 25.	V	1,000,000,000	2021. 1. 25. W은행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1,000,000,000원 변제기 2022. 1. 25.	2022. 1. 25.
13	2021. 1. 29.	X	600,000,000	2021. 2. 2. P은행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600,000,000원 변제기 2022. 1. 28.	2022. 1. 28.
14	2021. 1. 29.	Y	700,000,000	2021. 1. 29. G은행 일반자금대출 700,000,000원 변제기 2022. 1. 28.	2022. 1. 28.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8%이다.

나. C의 대출금 미지급, 당좌부도, 원고의 대위변제

C은 제1, 2, 3, 5, 6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기까지 상환하지 못하였고, 2021. 7. 14. 당좌부도로 제1 내지 14대출 전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제1 내지 14대출의 원리금 합계 9,905,804,6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21. 8. 31.	K은행	1,347,893,170	제3대출원리금 제8대출원리금
2021. 8. 31.	N은행	260,512,261	제5대출원리금
2021. 9. 1.	G은행	2,071,957,345	제1대출원리금 제11대출원리금 제14대출원리금
2021. 9. 6.	P은행	1,864,541,003	제6대출원리금 제10대출원리금 제13대출원리금
2021. 9. 6.	W은행	1,004,222,410	제12대출원리금
2021. 9. 9.	중소기업은행	2,184,862,801	제4대출원리금 제7대출원리금
2021. 9. 14.	은행	1,171,815,689	제2대출원리금 제9대출원리금
합계	9,905,804,679원		

다. 원고의 일부 구상금 회수, 구상금 보전을 위한 비용 지출

1) 원고는 2021. 8. 31.부터 2021. 9. 14.까지 아래 표 '회수금'란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제1,

3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중 합계 34,123,450원을 회수하였는데, 각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각 회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제1신용 보증계약	2021. 09. 06.	11,744,640	2021. 09. 02. ~ 2021. 09. 06.	5	연 8%	12,870
	2021. 08. 31.	1,225,610				
제3신용 보증계약	2021. 09. 01.	9,469,050	2021. 09. 01. ~ 2021. 09. 01.	1	연 8%	2,075
2021. 09. 09.	7,153,140	2021. 09. 01. ~ 2021. 09. 09.	9	연 8%	14,110	
2021. 09. 14.	4,531,010	2021. 09. 01. ~ 2021. 09. 14.	14	연 8%	13,903	
합계	34,123,450				42,958	

2) 원고는 C로부터 위와 같이 구상금 일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적절차비용으로 489,700원을 지출하였다.

라. C의 피고들에 대한 상표권 양도

1) C은 2021. 3. 1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상표권을 양도하고(이하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각 상표권에 관하여 제1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특허청 2021. 3. 19. 접수 D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이하 '제1이전등록'이라 한다).

2) C은 2021. 5. 21. 피고 주식회사 B1) (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9 내지 19항 기재 상표권을 양도하고(이하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각 상표권에 관하여 제2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특허청 2021. 5. 21. 접수 E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이하 '제2이전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제1 내지 14대출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C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액의 구상금, 구상금 회수를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상당액의 약정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C에게 가지는 위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제1, 2양도계약 체결 전에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제1양도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9 내지 19항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제2양도계약을 원인으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는바, 제1, 2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과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기하여 제1, 2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제1, 2이전등록은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 A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 내지 14대출의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 금전채권자로서 제1 내지 14대출 원리금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C이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상표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 A 역시 제1양도계약으로써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C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제1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는 C에게 제1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제2양도계약일인 2021. 5. 21.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이미 원고와 C 사이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C이 제2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후로 제1, 2, 3, 5, 6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기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2021. 7. 14. 당좌부도로 제1 내지 14대출 전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C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라고 볼 수 있는 2021. 8. 31.부터 2021. 9. 14.까지 원고가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제2양도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제9 내지 19항 기재 각 상표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C이 약 100억 원의 제1 내지 14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제2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이자 영업재산인 별지 목록 제9 내지 19항 기재 각 상표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제2양도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 B의 사해의사

제2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제2양도계약 체결 당시 C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피고 B 역시 제2양도계약의 체결로써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제2양도계약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당시 선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수익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제2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C에게 제2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주채광

판사홍사빈

판사김현정

별지

1) 상표권 양도 당시 상호는 Z 주식회사이다. 이후 2021. 9. 30. 주식회사 AA으로, 2021. 11. 22.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